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1-25

의 정 부 지 방 법 원

제 1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8가합52327 부당이득금

원 고 A
[redacted]

피 고 1. B 유한회사
[redacted]

2. [redacted]군
[redacted]

3. [redacted]광역시
[redacted]

4. [redacted]광역시 [redacted]구

5. [redacted]시 [redacted]구
[redacted]

6. [redacted]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1-25

7. D

피고 B 유한회사의 승계참가인

E 유한회사

[redacted]

변 론 종 결 2019. 5. 24.

판 결 선 고 2019. 8. 16.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redacted]광역시는 42,993,639원, 피고 [redacted]광역시 [redacted]구는 625,06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4. 10.부터, 피고 [redacted]시 [redacted]구는 1,956,42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1.부터 각 2019. 8. 16.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사회복지법인 C는 92,849,800원 및 그 중 85,783,237원에 대하여는 2018. 8. 3.부터, 7,066,563원에 대하여는 2019. 4. 14.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 유한회사, [redacted]군, D, 피고 B 유한회사의 승계참가인 E 유한회사에 대한 각 청구와 피고 [redacted]광역시, [redacted]광역시 [redacted]구, [redacted]시 [redacted]구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유한회사, [redacted]군, D, 피고 B 유한회사의 승계참가인 E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1-25

유한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redacted]광역시, [redacted]광역시 [redacted]구 사이에 생긴 부분 중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redacted]광역시, [redacted]광역시 [redacted]구가 각 부담하며, 원고와 피고 [redacted]시 [redacted]구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redacted]시 [redacted]구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사회복지법인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사회복지법인 C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청구취지

원고에게,

가. 피고 B 유한회사의 승계참가인 E 유한회사(승계참가인 참가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피고 B 유한회사)는 157,866,563원 및 그 중 150,8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7,066,563원에 대하여는 2019. 3. 1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redacted]군은 6,867,680원, 피고 [redacted]광역시는 113,632,540원, 피고 [redacted]광역시 [redacted]구(이하 '피고 [redacted]구'라 한다)는 1,652,040원, 피고 [redacted]시 [redacted]구(이하 '피고 [redacted]구'라 한다)는 2,614,370원, 피고 D은 85,794,66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

다. 피고 사회복지법인 C는 피고 B 유한회사의 승계참가인 E 유한회사(이하 '피고 승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1-25

계참가인'이라 한다)와 공동하여 위 157,866,563원 중 7,066,56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14.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D과 공동하여 위 85,794,661원 중 85,783,23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사회복지법인 C(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는 2002. 12. 2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의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경매절차를 통하여 피고 법인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락받은 자이며, 피고 법인, D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채권자로서 배당을 받은 자들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 경위

1) 피고 법인은 2005. 8. 11. 주식회사 F은행에 [redacted] [redacted]구 G 대 109㎡(이하 'G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 시멘트 블록조 기와지붕 단층주택 41.85㎡(이하 'G 건물'이라 한다),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39,200,000원, 채무자 피고 법인,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F(이하 'F은행'이라 한다)으로 하는 각 근저당권(이하 '기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해 주었다.

2) 피고 법인은 2005. 8. 12. F은행과 사이에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1-25

을 150,800,00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2005. 8. 16. 이 사건 토지, G 토지 및 건물에 그와 같은 내용의 변경등기를 각 마쳤다.

3) 한편 피고 법인은 건물 신축비용의 일부로 국가보조금 166,789,000원을 지원받은 다음 G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4) 피고 법인은 이 사건 건물 신축이 완료되자 2006. 9. 6. 이에 관한 피고 법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2010. 3. 3. F은행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추가근저당권(이하 '추가 근저당권'이라 하고, 기존 근저당권과 추가 근저당권을 통틀어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해 주었다.

다.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경매절차

1) 피고 B 유한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F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피고 법인에 대한 채권 및 이 사건 근저당권을 양수하였고, 2013. 7. 4.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redacted]북부지방법원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다.

2) [redacted]북부지방법원은 2013. 7. 5. 피고 회사의 신청에 따라 H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개시된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실시된 매각대금 감정평가에서 이 사건 건물은 208,313,140원(제시 외 건물 부분 4,398,800원 포함), 이 사건 토지는 346,110,000원으로 평가되었고, 매각방법은 일괄매각으로 결정되었다.

3) 원고는 2014. 2. 4. 열린 이 사건 경매절차의 3회 매각기일에서 372,190,000원으로 입찰하여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되었고, 2014. 2. 11.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2014. 3.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1-25

31. 매각대금을 완납하였으며, 2014. 3. 31.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의 배당

1) [redacted]북부지방법원은 2014. 4. 24. 열린 배당기일에서 배당할 금액 372,448,710원에서 집행비용 4,032,280원을 공제한 368,416,430원을 실제 배당할 금액으로 정하고, 피고 회사에게 1순위 채권자(근저당권자)로서 150,800,000원을, 피고 [redacted]군에게 2순위 압류권자(압류선착-조세)로서 6,867,680원을, 피고 [redacted]광역시에게 3순위 압류권자(조세)로서 113,632,540원을, 피고 [redacted]구에게 3순위 압류권자(조세)로서 1,652,040원을, 피고 [redacted]구에게 3순위 교부권자(조세)로서 1,058,390원 및 4순위 교부권자(환경개선부담금)로서 1,555,980원, 합계 2,614,370원을 각 배당하고, 채무자 겸 소유자인 피고 법인에게 잉여금으로 92,849,800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2)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 회사는 피고 법인의 배당액에 관하여, 피고 법인은 피고 회사와 피고 [redacted]광역시의 각 배당액에 관하여 각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이의신청일으로부터 1주일 이내에 배당이의소송을 제기치 아니하여 위 각 이의가 실효됨에 따라 위 배당표가 그대로 확정되었고, 피고 회사, [redacted]군, [redacted]광역시, [redacted]구, [redacted]구는 위 배당표에 따른 배당금을 수령하였다.

마. 피고 회사, D의 각 압류 및 추심명령 등

1) 피고 D은 2014. 3. 27. [redacted]북부지방법원 2014타채5730호로 피고 법인이 [redacted]에 대하여 갖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의 잉여금채권(이하 '이 사건 잉여금채권'이라 한다) 중 125,643,835원에 이르기까지의 돈에 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제1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제1압류 및 추심명령이 2014. 4. 1. [redacted]에게 송달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1-25

되었다.

2) 피고 회사는 2014. 4. 29. [redacted]북부지방법원 2014타채8128호로 피고 법인이 [redacted]에 대하여 갖는 이 사건 잉여금채권 중 176,704,461원에 이르기까지의 돈에 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제2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제2압류 및 추심명령이 2014. 5. 1.경 [redacted]에게 송달되었다.

3) 피고 D은 제1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이 사건 잉여금채권 중 71,677,832원을 추심하였고, [redacted]은 압류경합을 이유로 남은 잉여금 등 21,181,449원을 [redacted]북부지방법원 2014금1769호로 공탁하였다.

4) [redacted]북부지방법원은 I로 위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를 진행하였고, 2014. 8. 28. 열린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21,183,392원 중 피고 D에게 17,434,807원, 피고 회사에게 3,748,585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5) 피고 회사는 위 배당기일에 참석하여 피고 D의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하였으나, 피고 D과 사이에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3,317,978원을 지급받기로 합의하였고, 피고 회사, D은 위 배당표에 따른 돈을 수령하였다.

6) 이후 피고 D이 피고 회사에게 3,317,978원을 송금하여, 결과적으로 피고 법인에 대하여, 피고 D은 85,794,661원[= 71,677,832원 + (17,434,807원 - 3,317,978원)]을, 피고 회사는 7,066,563원(= 3,748,585원 + 3,317,978원)을 각 추심하였다.

바. 관련 소송의 경과

1) 피고 법인은 [redacted]북부지방법원 2014가단16101호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은 구 사회복지사업법(2011. 8. 4. 법률 제109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사회복지사업법'이라 한다)에 따른 주무관청의 기본재산 처분허가, 구 보조금의 예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1-25

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조금법'이라 한다)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이루어져 무효이고,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경매절차도 무효이므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원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라 주장하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이하 이에 따른 소송을 '관련 소송'이라 한다).

2) [redacted]북부지방법원은 2014. 12. 11. 피고 법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 법인이 항소([redacted]북부지방법원 2015나463호) 및 상고(대법원 2015다223350호)하여 상고심에서 피고 법인의 항소를 기각한 위 항소심 판결이 파기환송되었다.

3) [redacted]북부지방법원은 2016. 12. 16. '①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redacted]시장의 기본재산 처분허가가 있었으므로 구 사회복지사업법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고, ② 구 보조금법 관련 주장에 관하여는, 이 사건 토지의 처분은 구 보조금법에 따른 승인대상이 아니므로 이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으나, 이 사건 건물은 국가보조금을 지원받아 신축된 것으로 담보제공을 위해서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피고 법인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 없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추가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므로, 추가 근저당권 설정행위 및 그 담보실행에 터 잡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다'는 이유로 제1심 판결 중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 청구를 인용하며, 피고 법인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하였고([redacted]북부지방법원 2015나35131호), 원고와 피고 법인이 모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원고와 피고 법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위 파기환송 후 원심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1-25

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17다206380호).

사. 피고 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 등

1) 피고 승계참가인은 2018. 9. 28. 피고 회사로부터 피고 법인에 대한 채권 및 부수권리 등을 양수하였고, 2018. 10. 26. 피고 법인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2) 피고 승계참가인은 2018. 11. 19. 이 법원에 피고 회사의 승계참가인으로서의 참가를 신청하였다.

3) 피고 승계참가인은 2019. 1. 7.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소송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고, 원고는 2019. 3. 1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피고 승계참가인과 피고 회사 사이의 면책적 채무인수계약에 동의하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는 2019. 3. 15. 피고 회사 및 피고 승계참가인에게 각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가 제1, 2, 3호증, 을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경락받아 그 대금을 모두 납부하고 그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으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경매절차가 구 보조금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일괄매각 방식으로 진행된 이 사건 경매절차는 전부 무효이고, 피고들은 이와 같이 무효인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거나 피고 법인이 배당받은 잉여금을 지급받는 등으로 이익을 얻고, 원고는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와 같이 배당받거나 지급받은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1-25

또한, 피고 승계참가인은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소송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채무를 인수하였으므로, 피고 승계참가인은 원고에게 피고 회사가 배당받거나 지급받은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발생

1) 관련 법리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하여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부동산이 매각된 경우 비록 그 임의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68012 판결), 이러한 경우 임의경매절차가 무효가 되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매수인은 경매채권자 등에게 경매대금 중 그가 배당받은 금액에 대하여 일반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3다59259 판결).

2)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경매대금 상당액 부분

관련 소송에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추가 근저당권 설정행위 및 그 담보실행에 터 잡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라고 판단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추가 근저당권 설정이 무효로 됨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을 완납하였음에도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었고, 따라서 원고는 경매채권자 등에 대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된 경매대금 중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3)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경매대금 상당액 부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1-25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 중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부분이 무효이므로 민법 제137조 전단에 따라 이 사건 경매절차 전체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된 경매대금 중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분도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관련 소송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행위 및 그 담보실행에 터 잡은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다는 이유로 피고 법인의 청구 중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부분이 기각되었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는 유효하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보유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 중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경매대금 상당액의 반환을 구하는 부분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범위

1)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의 배당금 관련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실시된 매각대금 감정평가에서 이 사건 건물은 208,313,140원, 이 사건 토지는 346,110,000원으로 각각 평가되었고, 원고가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매각대금 372,190,000원을 완납하였으며, 실제 배당할 금액 368,416,430원 중 피고 회사에게 1순위 채권자(근저당권자)로서 150,800,000원을, 피고 [redacted]군에게 2순위 압류권자(압류선착-조세)로서 6,867,680원을, 피고 [redacted]광역시에게 3순위 압류권자(조세)로서 113,632,540원을, 피고 [redacted]구에게 3순위 압류권자(조세)로서 1,652,040원을, 피고 [redacted]구에게 3순위 교부권자(조세)로서 1,058,390원 및 4순위 교부권자(환경개선부담금)로서 1,555,980원, 합계 2,614,370원을 각 배당하고, 채무자 겸 소유자인 피고 법인에게 잉여금으로 나머지 92,849,800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고 그대로 확정되었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1-25

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된 368,416,430원 중 이 사건 건물에 관한 138,424,928원[= 368,416,430원 × 208,313,140원/554,423,140원[1], 원 미만 반올림, 이하 같다]은 법률상 원인 없이 경매채권자 등에게 배당되었다 할 것이고, 한편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부분을 제한 나머지 부분인 229,991,502원(= 368,416,430원 - 138,424,928원)만이 배당되었다면 피고들이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산정하면 아래 표 중 정당한 배당액란 기재와 같은바, 피고 [redacted]광역시, [redacted]구, [redacted]구 및 피고 법인은 원고에게 아래 표 중 차액란 기재와 같은 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단위 : 원)

피고	배당 순위	채권금액	실제 배당액	정당한 배당액	차액
피고 회사	1	150,800,000	150,800,000	150,800,000	0
피고 [redacted]군	2	6,867,680	6,867,680	6,867,680	0
피고 [redacted]광역시	3	113,632,540	113,632,540	70,638,901[2]	42,993,639
피고 [redacted]구	3	1,652,040	1,652,040	1,026,980[3]	625,060
피고 [redacted]구	3	1,058,390	1,058,390	657,941[4]	400,449
	4	1,555,980	1,555,980	0	1,555,980
피고 법인	5		92,849,800	0	92,849,800
합 계			**368,416,430**	**229,991,502**	**138,424,928**

2) 피고 회사, D이 각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지급 또는 배당받은 부분 관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회사, D이 무효인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 법인이 취득한 이 사건 잉여금채권에 대하여 각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피고 회사는 7,066,563원을, 피고 D은

1) 이 사건 건물 감정평가액 208,313,140원 + 이 사건 토지 감정평가액 346,110,000원
2) (229,991,502원 - 150,800,000원 - 6,867,680원) × 113,632,540원/(113,632,540원 + 1,652,040원 + 1,058,390원)
3) (229,991,502원 - 150,800,000원 - 6,867,680원) × 1,652,040원/(113,632,540원 + 1,652,040원 + 1,058,390원)
4) (229,991,502원 - 150,800,000원 - 6,867,680원) × 1,058,390원/(113,632,540원 + 1,652,040원 + 1,058,390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1-25

85,794,661원을 각 추심하여 위 피고들은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는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회사 또는 그로부터 이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채무를 인수한 피고 승계참가인과 피고 D은 원고에게 위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잉여금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배당절차 및 피고 D과의 협의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7,066,563원을 추심하였고, 피고 D이 이 사건 잉여금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배당절차 등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85,794,661원을 추심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피고 회사, D의 위와 같은 채권추심은 각 유효한 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것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은 추심은 원고의 피고 법인에 대한 이 사건 잉여금채권 관련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의 피고 회사, 승계참가인, D에 대한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작은 결론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redacted]광역시는 42,993,639원, 피고 [redacted]구는 625,06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4. 10.부터, 피고 [redacted]구는 1,956,429원(= 3순위 400,449원 + 4순위 1,555,9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4. 11.부터 위 각 피고들이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8.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1-25

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 제2조 제1항에 따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법인은 92,849,800원 및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돈 중 85,783,237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8. 3.부터, 7,066,563원에 대하여는 2019. 3. 1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 4. 14.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 제2조 제1항에 따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법인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redacted]광역시, [redacted]구, [redacted]구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며, 원고의 피고 회사, [redacted]군, D 및 피고 승계참가인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1-25

재판장 판사 하현우

판사 김성겸

판사 곽동훈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1-25

부동산 목록

1. [redacted] [redacted]구 [redacted] 대 139㎡

2. 위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철근)콘크리트, 평슬라브 지붕 4층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1층 77.79㎡

 2층 77,79㎡

 3층 67.97㎡

 4층 46.35㎡

 옥탑층 8.64㎡

 -끝-